

대구지방법원 2023. 8. 23 선고 2022나317244(본소), 2022나317251(반소) 판결

[제3자이의 ·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은규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음 담당변호사 정대규

변 론 종 결 2023. 7. 12.

판 결 선 고 2023. 8. 23.

제1 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6. 21. 선고 2021가단55040(본소),

2021가단69292(반소) 판결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21. 1. 27.자 2021가소203938 이행권고결정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21. 2. 23.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나. 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소외 회사 사이에 이 사건 동산에 관하여 2020. 10. 8.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동산을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본소 청구취지 기재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쪽 아래에서 5행 중 “없으므로,”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없으며, 오히려 당심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동산은 2021. 6.경까지 현실적으로 소외 회사가 운영하던 공장에 그대로 있었기에 피고가 이 사건 동산이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매도되었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위 증언에 의하면,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F은 피고를 포함한 직원들에게 이 사건 동산 매매 무렵 ‘회사에 빚도 좀 있지만 받을 돈이 많아 받을 돈 받고 하면 회사를 운영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것이므로, 설령 피고가 당시 이 사건 동산의 매매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매매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는 것이나 채무자인 소외 회사에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도 알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 제1심판결 제3쪽 아래에서 2행 첫머리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갑 5호증의 기재 및 당심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 당시 피고에게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2020. 5월부터 9월분의 체불임금 채권이 있었고 같은 해 10월분 임금 및 퇴직금 채권도 곧 성립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피고가 같은 해 10. 31. 소외 회사에서 퇴직하여 그 채권이 성립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채권 합계 28,762,373원 등은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 제1심판결 제4쪽 3행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소외 회사가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자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이 사건 동산을 매도하였으므로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1, 2, 6, 7, 8, 1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동산은 창호를 제작하는 데 필요한 기계로서 창호 제조업을 하는 소외 회사의 운영에 있어서 핵심적인 기계임에도 이를 원고에게 매도하여 2021. 6.경에는 소외 회사의 공장에서 칠곡군에 있는 원고의 동생이 운영하는 공장으로 이를 이전한데다가,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동산을 원고에게 매도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2020. 11.경 제3자에게 소외 회사가 운영하던 공장 부지와 건물까지 매도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고 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 제4쪽 7행 중 “갑 제3, 15호증의 각 기재” 다음에 “당심 증인 F의 증언”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4쪽 아래에서 5행에서 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③ 원고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F은 약 5, 6년 된 친구 사이인데, 원고는, 직원 임금과 퇴직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정도의 자금난을 겪고 있어 부도 위기에 처해 있던 소외 회사가 더 이상 이 사건 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이유가 없어 원고에게 그 매도를 제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면서, 당시 소외 회사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본소와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신안재, 판사 김석수, 판사 박만호

1. 조광 각도용 노칭기 1대
2. 조광 샷시 절단기(라인 포함) 1조
3. 조광 샷시절단 자동절기 1대
4. 조광 유타기 1대
5. 조광 클리핑기 1대
6. 평 자동절단기 1대. 끝.

